

【별표 1】 (제10조 제2항 관련) <개정 2023. 12. 28.>

1. 평정대상자별 평가자 및 확인자

평정대상자	평 가 자	확 인 자
본 부 장	대표이사	이사장
전문위원	본부장	대표이사
3급·4급·5급·관장	본부장	대표이사
6급이하	팀장, 관장	본부장

2. 근무평정 평가점수 반영 비율

평정대상자	평가점수 반영비율						
	성과평가 (A)	직무수행 능력평가		교육이수 평가 (D)	가점· 감점 (E)	합계 (A+B+C +D+E)	비고
		평가자 (B)	확인자 (C)				
본 부 장	0%	55%	35%	10%	별표3에 따름	100%	평가점수 합계는 100%를 초과할수 없음
전문위원	0%	55%	35%	10%			
3급·4급· 5급·관장	40%	30%	20%	10%			
6급이하	40%	30%	20%	10%			